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법률 제1819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 2021.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자 등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등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0.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제2조의4 및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등)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도·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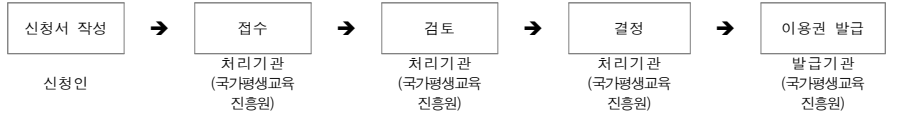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6.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u>5년</u> <u>회원탈퇴 시</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u>목적달성시 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u>주민등록번호</u>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합계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u>5년</u> <u>회원탈퇴 시</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가구의원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합계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1. 조사 대상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의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제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	서명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성명,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목적달성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신청·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평생교육이용권 [] 회수 [] 환수 통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자 (이용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환수 금액	원	
회수 및 환수 사유		
회수 및 납부 기한		
회수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관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회수(또는 환수)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회수 및 납부방법에 따라 반환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

직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
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
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
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
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
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신 설>

제2조의2 (생 략)

제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
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
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
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등)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
른다.

제2조의4 (현행 제2조의2와 같음)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 별지 제1호의5서식----.

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

청)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삭제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청) ① -----

----- 별지 제1호의6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

-- 별지 제1호의7서식-----
--.

② (현행과 같음)

④ 진흥원-----

-----.

<신 설>	제24조의2(지도·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81